

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1. 9. 16.목
보건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1. 08. 23. 성북구청장 제출(의안번호 378호)

나. 회부일자: 2021. 08. 26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28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【2021. 09. 08. 상정·원안가결】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민지선 복지문화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도시 조성 추진 근거 및 문화도시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문화도시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」를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3조)
- 구청장의 책무(안 제4조)
- 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조성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안 제6조)

- 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의견수렴·기초조사 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안 제8조)
-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안 제15조)
- 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16조~안 제20조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15조
- 예산조치 : 예산팀과 협의
- 입법예고
 - 기 간 : 2021. 7. 15. ~ 2021. 08. 04.
 - 의 견 : 총 1건(법인1)

입법예고결과 요약서		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견	조 치 내 용
성북 문화 재단	○ 제10조(위원회 구성 등) 1항에서 3항이 위원회 인적 구성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떨어짐으로 문항 축소(3개항에서 2개항으로) 후 수정 변경 요구	○ 반영 - 위원회 인적 구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의견대로 내용 수정 제10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25명 이내로 구성한다. 1. 당연직 위원 4명 가. 구청장 나. 부구청장 다. 문화도시 사업 담당 국장 라. 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 2. 위촉직 위원 21명 이내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 2명과 공동부위원장(이하 “부위원장”이라 한다) 2명을 두고,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1명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

		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1명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장과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촉직 중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성북 문화 재단	○ 제10조(위원회 구성 등) 4항의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전문분야 에서 “역사” 분야 추가 요구	○ 반영 － 역사 분야 또한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전문분야 추가 요청 의견 수렴 제10조(위원회 구성 등)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 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 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 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1. 문화도시 관련 전문가 2. 문화·예술·관광·도시·<u>역사</u>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. 문화예술단체 대표 및 문화예술 종사자 4.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 5. 성북구의회가 추천하는 서울특 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2명 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	○ 제11조(위원장 등의 직무) 2항 에서 당연직 위원장의 직무대행 은 당연직 부위원장이 하며, 위 촉직 위원장의 직무대행은 위촉 직 부위원장이 하도록 명시 요구	○ 미반영 － 공동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고 공동위원장이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하므 로,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 여 나누어서 직무를 대행하는 것 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 질 수가 있음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동성)

가. 개요

- 본 제정 조례안은 성북구 문화도시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,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,
-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 확산을 위해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30개 내외의 문화도시를 지정할 계획이며, 현재까지 제1·2차¹⁾ 문화도시를 선정하고 금년 12월에 제3차 문화도시를 선정²⁾할 계획임.
- 성북구는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2021년 6월 제4차³⁾ 문화도시 조성 계획안을 제출하고 예비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1차 서류검토에 이어 9월 2차 현장검토가 예정되어 있음.

1) - 【2018년 제1차 공모】 예비문화도시 10개 선정, 문화도시 8개 선정

· 경기 부천시, 강원 원주시, 충북 청주시, 충남 천안시, 경북 포항시, 경남 김해시, 제주 서귀포시, 부산 영도구

- 【2019년 제2차 공모】 25개 지자체 신청, 예비문화도시 10개 선정, 문화도시 4개 선정

· 인천 부평구, 강원 강릉시, 강원 춘천시, 전북 완주군

2) - 【2020년 제3차 공모】 41개 지자체 신청, 예비문화도시 10개 선정, 문화도시 '21년 12월 선정(예정)

· 서울 영등포구, 인천 서구, 인천 연수구, 대구 달성군, 경기 수원시, 전북 고창군, 전북 익산시, 전남 목포시, 경북 칠곡군, 경남 밀양시

3) - 【2021년 제4차 공모】 49개 지자체 신청, 예비문화도시 '21년 11월 선정(예정) ※ 현재 2차 현장 검토 중

· 서울 강동구, 서울 관악구, 서울 도봉구, 서울 동작구, 서울 성북구, 서울 은평구, 부산 수영구, 부산 금정구, 부산 부산진구, 부산 북구, 대구 수성구, 대구 달서구, 울산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강원 평창군, 강원 영월군, 강원 인제군, 강원 속초시, 경기 팽택시, 경기 연천군, 경기 안성시, 경기 용인시, 경기 의정부시, 경기 안양시, 경기 군포시, 경기 가평군, 경기 의왕시, 경기 화성시

〈2021년 제4차 문화도시 지정절차〉

지정 절차	추진 일정
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, 문화도시 지정 신청 (지자체)	공모기간 : 2021. 3. 11. ~ 6. 17. 제출기간 : 2021. 6. 7. ~ 6. 17.
↓	
문화도시 조성계획 검토 (서면, 현장, 종합발표)	'21년 6. ~ 10월
↓	
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(문체부)	'21년 10월
↓	*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체부장관이 승인
예비사업 추진 (지자체)	'21년 11월 ~ '22년 11월
↓	
문화도시 지정 (문체부)	'22년 하반기
↓	* 문화도시조성계획 승인 1년 이후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체부장관이 문화도시로 지정
문화도시 사업 추진(지자체)	'23년 ~ '27년(5년간)

- 문화도시 지정 절차는 지자체별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하고, 예비사업 추진 결과에 대하여 문화도시 지정 심의를 거쳐 최종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간 본 사업(총사업비 기준 최대 200억/국비 50%, 지방비 50%)을 추진하게 됨.

나. 주요내용

-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“문화도시”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,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과 구민의 문화예술 접근성 및 지역문화 진흥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,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원근거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, 기초조사 및 정책 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문화도시 정책 추진을 위해 ‘문화도시 추진위원회’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,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문화도시추진위원회는 민간과의 원활한 소통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음.
-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문화도시 조성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‘문화도시센터’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위탁 및 예산지원,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문화도시 시책의 기본방향과 그 추진체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려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의 「20년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(2020.4.)」에 따르면 문화도시 조성 계획 승인 심의 기준 중 “문화도시 실현 가능성·정책지원 및 재원 계획의 합리성” 항목에 “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확보계획”에 대한 평가 지표가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 : 회의록 참고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